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에 속한 교원, 직원, 연구원, 학부 및 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준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항상 바람직한 연구실천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연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창의적인 연구에 지속적으로 정진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스스로가 윤리적 주체임을 인식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윤리규정을 이해하고 항상 준수하여 본교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선도할 책임을 인식한다.

제 2 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4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개개인이 자신의 연구주제 및 연구를 지원하는 재원을 선택할 권리,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결론을 내릴 권리, 창의적 연구를 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항상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연구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책임자로서의 책무)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및 학생의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조건을 만들어 낼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주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및 학생과의 정기적인 접촉(회의)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그들의 연구가 과학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함
2.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및 학생들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본 연구윤리규정을 포함한 연구윤리 기준을 숙지시키고 학문적 비윤리 행위와 연구결과의 위조방지의 중요성을 항상 주지시켜야 함
3.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및 학생이 본교와 다른 기관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알게 하여 다른 연구자들과 상호작용하도록 돕고 학회 참석을 독려하며 그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4.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및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저자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여야 함
5. 연구책임자는 지도교수로서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율성과 평등성이 보장되는 연구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함<신설 2018. 11. 1.>

제6조(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연구자는 연구지원기관에 연구비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원하는 연구사업을 주어진 항목별로 명확하고 정직하게 서술해야 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2. 연구자는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제한 받지 않도록 해야 함
3. 연구용역의 결과 혹은 연구용역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학술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 받은 사실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함
4. 연구비는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비 부정행위 발생 시 본교 ‘내부감사규정’ 및 ‘연구비관리에대한내부감사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함

제7조(연구경력의 표현 시 지켜야 할 책임) ① 자신의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위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누락하거나 이전의 연구성과를 부당하게 과장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의 책임) ① 연구활동 기간 동안 자신의 연구역량과 전문성의 향상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문적 환경이 제공하는 자원과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연구활동에 영향을 주는 본교의 정책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의 설계와 제출에 관한 계획일정을 지키고, 지도교수(연구책임자)와 상의하여 연구 논문을 진척시키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학습과정에 있어서의 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학습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연구 또는 조사의 산물인 과제물(레포트 등)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학습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비윤리적인 학습행위가 심각한 학문적 비윤리행위로서 본교 학생 공동체의 윤리질서를 깨뜨리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② 학습과정 중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자신의 연구와 학습 결과물로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본 윤리규정과 해당 학문분야에서 특수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지켜야 한다.

③ 학습과정 중의 학생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자신이 작성해야 함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자신의 생각과 인용하는 글의 내용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해야 함
3.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정당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글에 빌려 올 수 있으며,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자료를 처음으로 만들어 낸 창작자의 공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글을 뒷받침할 수 있음
4. 출처를 밝혀 인용하더라도 인용한 자료만으로 자신의 글을 채우는 것은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벗어난다. 반드시 자신의 생각이 글의 주된 내용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글에서 종속적인 부분이어야 함
5. 과제물 작성 중 도표나 데이터를 조작(위조 또는 변조)하지 않아야 함
6. 과제물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거나 구매하여 제출하지 않아야 함
7. 과제물 작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 제출자로 명기하지 않아야 함
8. 자신이 이미 제출한 과제물을 다른 교과목의 과제물로 제출하지 않아야 함

제 3 장 연구활동에 있어서의 원칙

제10조(원칙)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의 주요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연구진실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정직성 :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정직한 자세로 연구활동과 심사활동에 임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2. 개방성 : 연구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와 다수의 검토자를 통한 연구결과 검토를 위하여,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작권 및 다른 제약조건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구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연구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적 가정들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제시하여야 함
3. 체계성 :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하여야 함
4. 존중 : 연구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5. 공정성 :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임해야 하며 자신의 편견을 개입시키지 않고 공정한 시각으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제11조(연구의 기획 또는 제안) 연구자는 선택한 연구의 주제와 방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타인의 시각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의 의도와 방법론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구 참여자 사이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개정 2016. 10. 1.>
 2.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개정 2016. 10. 1.>
 3. 연구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4.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 학술지에 투고·게재하거나 부실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행위<신설 2024. 12. 1.>
- 제13조(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주요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과와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함
 2. 다른 연구자와 협력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할 시 공동연구자들 간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함
 3. 연구의 기본개념을 세우거나,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연구자를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됨
 4. 공동저자로 명단에 오른 연구자는 발표한 논문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받아 들여야 함
 5.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연구 기여도 및 해당 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충분한 합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함
 6.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함

제 4 장 연구부정행위

제14조(연구 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부정행위 강요·연구이탈 행위 등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부당하게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락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 10. 1, 2023. 2. 15.>

제15조(표절) ① 표절의 좁은 의미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와 자신의 기존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여 새로운 창작물로 보이게 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는 자신의 자료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16조(부당한 중복게재)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도록 하며, 본 조에서 정의하는 표절이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저작물을 적절

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서의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타인의 지적 자산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부당하게 이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 10. 1.>

② 전 항의 타인의 저작물이란 학술적 저작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든 미발표된 것이든 인쇄되었든 웹자료에 있든 타인이 쓴 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그래프, 사진 등을 말한다. 즉, 전문학술서적,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기타 간행물에 발표된 논문, 학술회의 발표논문 등 출판된 자료와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투고 중인 논문, 슬라이드 자료, 강의 교재, 웹 상에 올려놓은 자료, 학술적 토론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개인적 대화 등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③ 표절은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연구 부정행위로 타인의 자료 중 핵심적인 부분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옮겨오는 심각한 것에서부터 적절한 인용법을 몰라 실수로 출처표시 하나를 빠뜨리는 경미한 잘못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옮겨 온 부분이 일부분에 불과하고,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자신이 잘 인지하지 못하여 저지른 실수라 할지라도 표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표절은 연구윤리의 범위를 넘어 저작권법에도 관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④ 표절은 보통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텍스트 표절, 아이디어 표절, 모자이크 표절, 말 바꾸쓰기 표절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규정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되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가 표절의 대표적(또는 통상적) 사례로 보며,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이와 유사한 경우도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표절로 판단한 경우 연구자의 표절행위로 본다.

1.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저작물 혹은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에 대한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단어의 첨삭이나 동의어 대체 등의 형태로 다르게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됨(다만, 발췌·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2.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 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하는 행위. 이는 사용언어, 문장 및 표현(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됨
 3.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4. 통상적으로 타인의 논문 또는 저작물에서 연속적으로 두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함
 5. 연구계획서 작성 시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
 6.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 혹은 아이디어의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
- ⑤ 출처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함으로써 표절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자는

이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를 부적절한 출처 표시로 인한 표절의 대표적(또는 통상적) 사례로 보며, 이와 유사한 경우도 조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단한 경우 연구자의 표절행위로 본다.

1.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책의 서문, 논문의 처음 등에 포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2.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로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 중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한 경우
3.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혔어도 인용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인용 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참고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는 자신의 저작물에 가장 많이 인용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통째로 누락시키는 경우와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지만 출처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는 경우도 포함
4. 원래의 저작물이 아닌 2차 저작물을 인용하면서도 원본을 인용한 것처럼 하거나 2차 저작물에서 인용하면서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5. 출처를 밝히고, 적절한 인용표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다만, 리뷰논문(review article)과 같이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 정리 또는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
6.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표시했지만 인용부호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인용하는 경우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성과가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된다는 것은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부당한 중복게재)〈개정 2016. 10. 1.〉 ① 연구자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 또는 심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 책임자의 허락 없이 또는 충분히 서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 논문 또는 가설, 자료, 토론, 논점,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록 자신의 저작물에서 빌려온 아이디어, 자료, 단어, 문장이라고 해도 원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표절이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자신의 자료를 게재·출간 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중복게재로 판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결과물을 담아야 함
2.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구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됨

3.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함
4.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함
5. 중복게재는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해당되나 학위논문, 연구 결과보고서,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정기간행물의 경우도 해당됨
6. 동일한 가정 또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은 데이터 중 부분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독립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행위는 조각출판(Salami publication)으로서 중복게재에 해당함
7.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 처음 투고한 학술지 게재가 거부 되거나 논문의 게재가 철회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임

③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미 발표된 자신의 저작물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2.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경우
3.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에 연구 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
4.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과 2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게재한 경우(한 언어로 출간된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5.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시켜 나가는 연구과정에서 나온 후속 저작물의 경우
6.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을 출간한 후 연구 데이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이 추가되어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
7.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 호로 게재되는 경우
8.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제17조(위조) ①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로서, 과학적 연구자료의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속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위조의 대표적(또는 통상적) 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경우도 조사위원회에서 위조로 판단한 경우 연구자의 위조행위로 본다.<개정 2016. 10. 1.>

1.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회견을 전혀 하지 않고 가상의 주제에 대한 질문표를 완성하는 것
2. 자연과학·공학분야에서 시행한 적이 없는 과학실험의 연구자료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3. 실제로 시행했던 과학실험을 통해 얻은 연구 자료에 추가적인 통계학적 유효성을 얻기 위하여 허구의 연구 자료를 첨가하는 것
4. 연구계획서에 대한 순응도나 연구결과의 유효성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기록에 허위로 임상 정보를 삽입하는 것

② 조사위원회에서는 연구진실성 여부, 특히 위조나 변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원자료와 연구노트를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삼는다. 원자료란 관찰, 조사, 실험연구에서 가공하지 않고 직접 얻은 일차 자료를 말하며, 관찰 값, 실험계획,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된 프로토콜, 연구노트, 분석 기기 또는 컴퓨터의 출력자료, 사진, 인터뷰 녹취록 등이 포함된다. 원자료는 언제든 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하는데 학술지 편집자나 심사자가 원본자료를 원할 수도 있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8조(변조) ①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서 과학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연구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연구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과학적 혹은 통계학적 검증 없이 일치하지 않는 연구자료를 선택적으로 생략·삭제·은폐하는 것을 변조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변조의 대표적(또는 통상적) 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경우도 조사위원회에서 변조로 판단한 경우 연구자의 변조행위로 본다.<개정 2016. 10. 1.>

1. 수집한 원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2. 연구 자료를 변경하여 자료의 상이함을 수정하는 것
 3. 연구기록에서 연구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4.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5. 실험에 사용한 재료명과 실험 방법 등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6. 논문에 조사대상 피험자 수 등을 틀리게 언급하는 것
 7.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8. 계속(또는 후속) 연구과제 연구비를 신청할 때 연구 자료를 변조하는 것
 9. 논문 발표를 위해 제출된 초록이나 전문적인 과학자 모임에서 구두로 발표할 때 연구범위에 대해 그릇되게 언급하는 것
 10. 어떤 피험자의 기록을 다른 피험자의 기록으로 바꾸는 것
 11. 등록되어 있는 연구자가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자료 센터로 보고 하는 것
 12. 피험자가 선택 기준 검사를 위해 방문한 날짜와 결과를 변경하는 것
 13. 피험자의 현재 상태나 연구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연구자료를 새롭게 하지 않는 것
 14. 실험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험검사의 특정한 결과를 변경하는 것
 15. 데이터 기록 날짜 등을 변경하는 것
 16. 사진 자료 등에서 일부만을 부각하거나 삭제하는 것
- ② 연구자는 자료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주요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분야와 연구방법론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서 통용되는 자료처리 원칙을 숙지함
2. 해당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에 따라 자료를 처리했다고 해도 발표하는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과 결과, 중요성 등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함
3. 원자료가 지니는 특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는 왜곡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자료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늘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함
4. 연구자는 다른 방법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반복된 연구나 분석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지, 다른 방식으로 결과를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항상 숙고해야 함
5. 1차 자료를 그래프나 도표로 변환하는 경우에도 변환된 자료와 원자료를 반드시 함께 보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자료에서 다시 분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실험 결과를 부정확하게 대변하는 자료 조작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금함

제19조(부당한 저자 표시)<개정 2016. 10.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의 각 호에 위배되는 경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이는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1. 저자 자격 기준 :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관리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음
2. 저자 표시 순서 :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3. 저자의 소속 표시 :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4. 교신저자 : 교신저자는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서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함

제20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개정 2016. 10.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1조(부정행위 강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22조(연구이탈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1. 출판 부정행위 : 중복출판, 분할출판 등

2. 데이터의 부적절한 처리·보관 : 기록미비, 보관부실, 중요데이터 파기, 부주의로 인한 데이터 기록 오류, 데이터의 정당하지 않은 비공개
3. 연구 주제 상 부정행위 : 생명연구 윤리위반, 빈약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실험기획 등
4. 연구관리 부정행위 : 부당한 연구비 사용, 논문심사자로서의 지위남용, 허위정보기재
5. 개인적 부정행위 : 부적절한 처신, 부실한 학생지도, 타인의 연구방해, 부정행위에 관여 및 방조 등

제 5 장 연구자료의 관리(연구노트)

제23조(연구자료의 작성원칙 및 기록) 연구자는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료로서 관리해야 하며, 특히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에게는 연구노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연구노트 기록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는 전자연구노트로 연구자료를 관리함
2. 연구노트는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함
3. 연구노트 작성대상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기록하여야 함.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음
4.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24조(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 연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연구자료는 다음의 각 호의 주요사항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장은 본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 결과물을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본교의 자체보관소(산학협력단, 정보통신원) 또는 제3의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음<개정 2021. 3. 1.>
2.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함
 - 가. 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나.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즉시 산학협력단에 시스템 상으로 제출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 다. 연구자의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즉시 산학협력단에 시스템 상으로 제출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은 시스템 상으로 연구노트의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해야 하며, 연구노트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의 ‘전자연구노트작성및관리규정’을 따라야 함

제 6 장 이해상충(이익상충)

제25조(이해충돌의 정의) 이해충돌이란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목적, 연구활동의 수

행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충을 의미하며, 연구자는 이해상충에서 벌어지는 다음 각 호의 주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수행하는 연구의 목적이 자신의 학문적 입장,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과 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
2.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및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함
3. 연구자는 동료교수, 학생, 학교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4. 연구자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전적 이익을 좇아 ‘제4장의 연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5.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위해 본교의 설비, 인력, 장비, 시설 등 본교의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학생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본교의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에 관하여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함
7. 특수관계인의 저자 표시 : 연구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미성년자 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공동 연구 발표 또는 논문 공저 시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함<신설 2024. 12. 1.>

제 7 장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제26조(인간 피험자 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상시험, 의생명과학, 행동과학 등을 포함)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요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함
2.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게 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됨
3.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함

제 8 장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

제27조(원칙)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존중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대체원칙 : 비동물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
2. 축소원칙 :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
3. 개량원칙 : 실험방법, 기술 및 도구 등을 개선하여 동물실험의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동물의 고통 및 불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

제28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동물대상 연구는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제29조(동물대상 연구의 종료) 동물대상 연구를 종료한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 시켜야 함
2. 실험동물 사체의 보관 및 처리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를 따라야 함

제 9 장 연구의 안전관리

제30조(연구실 안전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들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본교 관련부서에 신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2. 연구원들은 연구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기준 및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② 본교는 연구자들이 연구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제공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본교 ‘연구시설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생물안전관리) 생물자원(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미생물, 프리온 등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을 의미)을 이용하는 연구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①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 내장기기,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구매·사용·폐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방사선을 취급하는 연구자는 방사선장해 방어를 위하여 본교 ‘방사성동위원소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인화성물질은 원칙적으로 옥내 저장소에 보관하되, 실험실에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보관하며, 실험실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은 특성에 맞게 분류·저장하여야 한다.

제 10 장 연구윤리 교육

제33조(본교의 책무) ① 본교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의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자료의 개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

제34조(연구자의 책무) ①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원서약서(별지 1) 내용을 숙지하고 서약서에 사인 후 연구개시보고서(서식 10호)와 함께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연구자는 영문 연구원서약서(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윤리교육의 내용) 연구윤리교육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11 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신설 2023. 2. 15.>

제36조(연구자 권익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④ 대학은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에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37조(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 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기간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9조(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자 건강 보호) ① 대학은 「울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방사선으로부터 공공의 안전 확보, 생물 분

야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환경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기구로서 “연구실안전관리센터”와 안전관리 심의기구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 및 지침과의 관련)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본교 ‘울산대학교연구윤리·진실성확보를위한지침’을 따르되, 연구윤리진실성 조사위원회에서는 본교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검증 시 본 규정의 내용을 기본으로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연구원 서약서

과제번호			
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위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책임자 또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보안에 해당되는 모든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2. 본 연구과제의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류나, 위조·변조·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 연구과제 수행 시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연구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울산대학교 “전자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사용하여 연구과정에서 발견·도출한 각종 아이디어, 연구방법, 데이터 및 현상들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보관한다.
4. 본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지급받음에 있어, 인건비 수령계좌는 본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규정한 참여율을 준수하고, 지급 받은 인건비를 전적으로 본인 책임 하에 사용한다.
5. 본 연구과제 연구비 집행 시 해당 사업의 규정 및 도덕적 의무를 준수하며, 이에 반하는 연구비 부적정 집행 및 연구비 부당집행을 하지 않는다.
6.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인정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 및 교내규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Attachment No.2

Researchers' Pledge

Number of Research Project	
Title of Research Project	
Full Name	ID Number

As the researcher who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project, I pledge to observe and conscientiously fulfill the following obligations:

1. I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obtained or made known in the course of this research project, to anyone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the director of this research project or the representative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of University of Ulsan; nor will I make use of any information related to this research project for my own purposes or any 3rd party's benefits. I shall fulfill my confidentiality duties during and after this research project.
2. With respect to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project, I shall not forge, falsify, plagiarize or intentionally manipulate any experiment or result; nor shall I make an error or a mistake due to my negligence or inaccuracy.
3. To obtain objectivity and accuracy and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this research, I shall precisely record all ideas, research methods, data and phenomena related to this research project in the designated research notebook as per the "Guidelines for recording and managing electronics research notes," as established by University of Ulsan.
4. In regard to receiving salary for this research project, my salary shall be paid into the bank account that is open under my name; and I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he use of my salary. In addition, I shall observe the participation rate as provided for in the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project.
5. In regard to spending research funds for this research I shall comply with all relevant regulations and ethical obligations; and shall not make any unreasonable and/or unjustifiable use of the research funds.
6. I have carefully read and considered all clauses stated above, and agree that I shall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s as per relevant statutes and the school policy in case violation of any the above.

Month. Day. Year

Researcher's Name:

(Signature)

Dear Director of Foundation for Industry Cooperation, University of Ulsan